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③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p> <p>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도시관리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③간사는 하수담당이 된다.</p> <p>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담당이 된다.</p>

공해로 위협받는우리영등포구민의피해를줄이기위한결의문(안)

의안 번호	94
----------	----

발의년월일 : 1999. 11. 8.
발 의 자 : 유남열의원외5인

1. 주 문

서울특별시의 목동개발계획에 의거 소각장 설치후 우리 영등포구민은 소각장에서 분출되는 분진과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바 각계각층에 피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영등포구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열악한 환경속에 있으며,

- 나.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시 건설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지난 15년간 분진, 다이옥신 및 황산화물질이 배출되어 우리 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 다. 양천구청과 구민은 이기적 지역편의주의를 버리고 더 이상 타지역 구민에게 환경오염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장을 즉시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 라. 그 동안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방관으로 일관했던 목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영등포구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데 대한 보상요구를 결의하고자 함.

우리 구민의 삶을 위협하는 목동 소각장을 이전하라.

우리 영등포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뿌리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신도시개발정책에 밀려 작금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오직 국가발전을 위해 모든 공해와 환경의 악조건을 감수하면서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 가꾸는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 구민은 이웃 양천구의 신시가지개발과 함께 들어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다이옥신 및 황산화물질 등으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 영등포구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역편의주의에 의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40만 영등포구민과 함께 우리 구 22명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양천구와 양천구민은 이웃과 함께 한다는 공동체의식으로 이제 더 이상의 지역편의주의를 버리고 쓰레기 소각장 가동을 즉시 중단 이전 조치하라.
2. 그 동안 열병합발전소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40만 영등포구민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적극 보상하라.

1999. 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